

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추가 합격자 공고

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공무직 근로자[안전관리원(야간/감시단속적근로자)] 채용 추가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10일

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

□ 최종합격자 * 개별문자발송

채용예정분야	직 종	최종합격자	비고
안전관리원 (야간/감시단속적근로자)	공무직	05-서○경	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- 제출기간 및 방법 : 2025. 4. 14.(월) 18: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
 - 주소 :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75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
- 제출서류
 - 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상세) 각 1부
 - ② 채용신체검사서(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)
 - ③ 반명함 사진(3×4) 2매
 - ④ 주민등록등·초본 1부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군경력 포함
 - ⑤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 - ⑥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※ [서식 1] 참조
 - ⑦ 공정채용확인서 1부 ※ [서식 2] 참조
 -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※ [서식 3] 참조
 - ⑨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

□ 공지사항

- 합격통보 후에라도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및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기획운영과 ☎ 063-290-9303

- 붙임 1. 결격사유 확인서 1부.
2. 국가유산청 공정채용 확인서 1부.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. 끝.

[붙임 1]

결격사유 확인서

- 성 명:
- 생년월일:

본인은 국가유산청 공무원 등 근로자로 최종 임용되기 전 다음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였으며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

임용 후 확인서 내용과 달리 사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25 . . .

확인자: (인)

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

